

수료자의 연구등록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청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자와 각종 연구지원 사업 참여자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료자의 연구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9. 10. 11.)

제2조(등록자격) 학위과정별 수료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.

1.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발표 신청자
2. 학위청구논문 발표 신청자
3. 각종 연구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

제3조(등록절차) 연구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반드시 지정 된 기일 내 등록
2. 연구등록신청서를 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
3. 지정 된 장소에 연구등록금 납부

제4조(신분 부여 등)

1. 연구등록을 한 자는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.
2. 연구등록을 한 자는 도서관, 실험실습실 등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학교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3. 연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각종 연구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5조(연구등록금) 학기당 연구등록금은 다음과 같다.

1. 인문사회계열: 120,000원
2. 자연과학계열, 공학계열, 예·체능계열, 의학과: 150,000원

제6조(등록학기) 등록학기는 다음과 같다.

1.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발표(제출) 학기
2. 학위청구논문 발표 학기
3. 각종 연구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기

제7조(연구등록금 면제) ① 연구비 오천만원 이하 또는 연구기간 3개월 이내의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와 무급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자 등은 연구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② 학위청구논문 발표 학기와 각종 연구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학기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등록하지 않는다.

③ 제2조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등록 최초 1회에 한하여 등록하고 이후 연구등록에 대한 연구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다.

제8조(등록취소) ① 연구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연구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연구등록금은 소정의 기간 내에 한하여 전액 환불할 수 있으며, 연구등록금 상당의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1.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① 2014학년도 전에 입학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발표 신청 시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.

② 2014학년도 전에 각종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014년 7월 까지 종료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등록금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.

2. 이 개정지침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3. 이 개정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